

「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2월 25일

강 원 도 지 사

## 「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사유

- 국세(법인세, 소득세) 감면 폐지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확대, 시설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기준 완화 등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,
- 기존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외국인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(안 제2조)
  - 고도기술산업, 산업지원 서비스업 → 신성장동력 산업에 속하는 사업,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사업, 소재·부품 및 장비사업
-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 조항목 정비(안 제5조)
  - 조례 제10조 → 조례 제9조

- 외국인 투자기업 시설보조금 지원대상 시설 및 지원기준 완화(안 제7조제①항, ③항)
  - 공장시설, 30억원 초과 → 공장 또는 연구시설, 10억원 초과
- 컨설팅비용 지원 한도액 증액(안 제8조제①항)
  - 비용은 외국인투자 확정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1억원 → 비용은 5억원
-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기준 완화(안 제9조의1)
  - 투자금액이 1억불 이상 → 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(참조 : 중국통상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#### < 의견 제출 및 문의처 >

- 주소 : (24266)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(봉의동) 강원도청 중국통상과
- 전화 : 033-249-2932
- 팩스 : 033-249-4021
- Email : nequi1215@korea.kr

### 4. 참고사항

-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(안) : 붙임

##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고도기술산업, 산업지원 서비스업”을 “신성장동력 산업에 속하는 사업,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사업, 소재·부품 및 장비사업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제10조”를 “제9조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공장시설”을 “공장 또는 연구시설”로, “30억을”을 “10억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공장을”을 “공장 또는 연구시설을”로, “공장등록”을 “공장 또는 연구시설 등록”으로, “공장을”을 “공장 또는 연구시설을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외국인투자 확정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1억원”을 “5억원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호 중 “1억불”을 “3천만불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입지보조금”이란 외국인투자지역 또는 도지사가 외국자본의 도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제조업, <u>고도기술산업, 산업지원 서비스업</u> 의 공장시설 또는 관광업등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를 지원하거나 정상임대료 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.	1. ----- ----- ----- 신성장동력 산업에 속하는 사업, <u>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사업, 소재·부품 및 장비사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2. ~ 7. (생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
제5조(고용보조금) ①조례 제10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20명이상 상시 고용할 경우에 6개월 범위에서 초과 고용인원 1인당 월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고용보조금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경우에는 거주지역의 제한없이 위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.	제5조(고용보조금) ①---- <u>제9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시설보조금)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30억원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50억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.

② 삭 제

③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시작일부터 1년이내에,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컨설팅비용 지원) ①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원하는 컨설팅 비용은 외국인투자 확정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지원하고자 하는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 실시예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

② (생 략)

제9조(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) 조례 제17조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 기업과 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와

제7조(시설보조금) ① -----  
-----  
공장 또는 연구시설-----  
----- 10억을 -----  
-----  
-----.

③-----  
-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-- 공장 또는 연구시설 등록-----  
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-----  
-----  
-----.

제8조(컨설팅비용 지원) ①-----  
-----  
5억원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) -----  
-----  
-----

같다.	---
1.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<u>1억불</u> 이상인 경우	1. ----- <u>3천만불</u> -----
2. 3. (생 략)	2. 3. (현행과 같음)